



企業經營과 税金講話 6

企業經營의 合理와 効能을 為해 알

기 쉽게 엮어 가는 税金特講을 連

載한다.

相續稅란 무엇인가?

納稅義務者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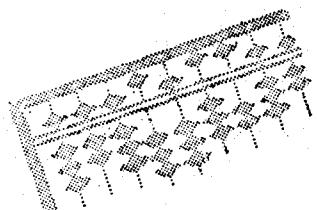
贈與稅란 무엇인가?

課稅財產이란?

李 文 宰

韓國稅務會計研究會長

第6講 相續稅와 贈與稅



相續稅는 相續이나 遺贈에 의하여 財產을 取得하는 경우에 그 取得者에 대하여 그 財產의 価額을 標準으로 하여 課稅하는 税金이다.

租稅理論上 相續稅는 財產相繼에 대하여 課稅하므로 収得稅의 一種이라고도 하겠다. 곧 相續稅는 財產의 相續이라는 事實에 대한 課稅이기 때문에 副對의인 収得課稅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相續財產 그 自体를 捕促하면 財產課稅 즉 所有課稅이기도 하고 또 財產權의 移転이라는 事實에 着眼하면 流通課稅라고도 할 수 있으니 이의 分類는 論者에 따라 区分하다 하겠다.

封建社會에 있어서는 家庭이 生活의 中心이었기 때문에 財產의 相續에 課稅하는 社會的인 理由는 発見할 수 없었으나 個人主義思想의 發達이나 富의 偏在是正하려는 思想이 拾頭됨에 따라 不勞所得이라 할수 있는 財產相續에 대한 社會的인 批判이 強해지고 따라서 相續稅는 世界各國의 現象이 加重賦課의 傾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相續稅는 이를 回避할 目的으로 贈与의 形式을 取하는 일이 있음으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相續稅의 补完稅로서 贈与稅가 設定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贈与稅가 相續稅法에 包含되어 있다.

I. 納稅義務者

1. 納稅義務者

相續稅의 納稅義務者は 原則적으로 相續財產 또는 遺贈財產을 받는 個人이다.

그리고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各者가 받은 財產의 占有하는 比例에 따라 相續稅를 納付하여야 하며 또한 相續人受遺者 또는 相續財產価格에 算入된 贈与를 받은 者(遺贈이 아님)는 서로 連帶하여 相續稅를 納付할義務가 있다.

2. 相續開始와 納稅地

財產相續은 民法에 의하면 死亡으로 인하여 開始된다고 하였다. (民法997)

따라서 相續稅를 課稅하는데 있어서도 相續의 開始日이라 한은 被相續人の 死亡日이 되는 것이며 失踪宣告로 인한 相繼의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相繼開始日로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相繼稅의 納稅地는 相繼開始地를 管轄하는 稅務署로 하며 相繼開始地는 被相續人の 住所地를 말한다.

또한 相繼開始地가 國外인 때 즉 被相續人の 住所地가 國外인 경우에는 國내에 있는 財產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稅務署가 所管稅務署로 되며 二個所以上의 稅務署管内에 相繼財產이 所在할 때에는 主된 財產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稅務署로 하게 되었다.

II. 相繼財產

相繼이란 死亡한 사람에게 속하는 一切의 權利

義務가 相繼人에게 承繼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財產相繼이므로 이에 関聯한 것만 찾아서 相繼稅의 課稅方法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相續人

相續人은 被相繼人의 配偶者와 一定한 血緣의 血族인데 財產相繼에 있어서 民法上의 相續人이 되는 順位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民法 1,000)

- ① 被相繼人의 直系卑屬
- ② 被相繼人의 直系尊屬
- ③ 被相繼人의 兄弟姊妹
- ④ 被相繼人의 8寸以内의 傍系血族 被相繼人의 妻는 위 ①号 ②号와 同順位로 共同相繼人이 되며 ① 및 ②가 없을 때에는 單獨相繼人이 된다. (民法 1,003)

여기에서 또한 同順位의 相繼人이 数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등의 相繼人이 数人일 때에는 共同相繼人이 된다. (民法 1,000 ②)

이밖에 胎兒의 順位에 관해서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보며 婚姻한 때 出子의 順位에 関해서는 父母가 婚姻한 때 出生한 것으로 본다. (民法 1,000 ③, 988, 989)

그리고 相繼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姊妹가 相繼開始前에 死亡하거나 欠格者가 된 경우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欠格된 者의 順位에 가름하여 相繼人이 된다. (民法 990)

2. 相繼人

遺言으로 相繼人을 定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遺言에 따른다. 즉 被相繼人은 遺言으로 相繼財產의 分割方法을 定하거나 이를 定할 것을 第3者에게 委託할 수 있고 相繼開始의 날로부터 5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期間內의 그 分割를 禁止할 수 있다 (民法 1012)

遺言으로 相繼分의 指定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相繼人에 따른다.

3. 法定相繼分

遺言으로 定하지 아니한 경우에 相繼人이 받는 相繼分은 民法上 다음과 같다. (民法 1009)

① 同順位의 相續人이 人일 때에는 그相續分은 均分으로 한다.

가, 財產相續인이 同時に 戶主相續을 한 경우에는 相續分은 그 固有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나. 女子의 相續分은 男子의 $\frac{1}{2}$ 로 한다.

② 同一戸籍内에 없는 女子의 相續分은 男子의 相續分의 $\frac{1}{4}$ 로 한다.

③ 被相續인의 妻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男子의 相續分의 $\frac{1}{2}$ 로 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男子의 相續分과 均分으로 한다.

4. 相續의 承認 또는 抛棄

財產相續人은 相續開始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原則적으로 3個月内에 이를 承認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民法1009)

財產相續인이 相續을 포기할 때에는 法院에 이를 申告하여야 하고 (民法1041)

포기한 相續分은 他相續인의 相續分의 比率로 그 相續인에게 归属한다 (民法1043).

5. 遺贈

遺贈이라 함은 遺言으로서 財產을 他人에게 無償으로 贈与하는 것을 말하는데, 遺贈으로 財產을 取得한 경우에도 相續인과 同一하게 相續稅가 賦課된다.勿論이다.

III. 課稅財產

1. 課稅財產의 범위

被相續인이 國내에 住所를 둔 때에는 相續財產의 全部에 대하여 相續稅를 賦課하고 (無制限納稅義務) 被相續인이 國내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國내에 있는 相續財產에 대해서만 相續稅를 賦課한다. (制限納稅義務)

2. 看做相續財產

다음에 계기하는 것은 相續인일 경우에는 相續에 의하여 相續以外의 者일 경우에는 遺贈에 의하여 取得한 相續財產으로 看做한다.

① 生命保險金, 損害保險金

被相續인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人과 相續人以外의 者가 받는 保險金이 다음 형식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

$$\text{保險金} \times \frac{\text{被相續人의 負担한 保險料}}{\text{死亡時까지 持入된 保險料額}}$$

이 경우에 被相續인이 負担한 保險料는 保險証분에 記載된 保險料의 金額에 의하여 計算하고 保險相續에 의하여 被相續인이 配當받은 利益配當金으로서 当該 保險料에 充當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充當된部分의 利益配當分相当額은 被相續인이 負担한 保險料에 포함한다.

그리고 保險契約者가 被相續人以外의 者인 경우에도 被相續인이 現実로 保險料의 支給을 하였을 때에는 被相續人을 保險契約者로 看做하며 다만 相續人과 기타의 者가 받는 保險金의 合計額이 百万원을 초과하는 部分에 限한다.

② 退職手当, 功勞金

退職手当 功勞金 또는 이에 類似한 給与로서 被相續人에 支給할 것이 被相續인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相續人과 相續人以外의 者에게 支給될 때에도 相續財產으로 본다. 다만 給与合計額이 百万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部分에 限한다.

그러나 그 財產에서 생기는 利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相續人, 被相續人 또는 그 親族에게 归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国家 또는 公共團體에 寄附한 財產

② 相續人稅法施行令에서 定하는 諸條件에 의하여 運營되는 宗教事業, 慈善事業, 學術事業·기타 公益事業에 出捐한 財產

③ 民法上의 치료費 또는 教育費로서 通常扶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金品

④ 罹賢救濟品 기타 不遇한 者를 도움기 위한 金品으로서 20万원 未滿의 것

⑤ 政党法의 規定에 의한 政党에 贈与 또는 遺贈한 財產

⑥ 紀念品, 祝賀金, 賦儀金, 婚需用品 기타 이에 類似한 金品으로서 20万원 미만의 것

以上에 제기하는 非課稅財產은 贈与를 한 경우에도
亦是同一하다. 이밖에도 非課稅로 되는 財產은 民法 第996條에 規定하는 財產과 公務員年金法에 의하여 支給되는 遺族扶養金 및 遺族一時金 등이 있다.

(註: 民法996 = 墳墓에 屬한 一町以内의 禁養林野와 6百坪以內의 墓上인 墓地, 族譜와 祭具의 所有權은 戶主相續人이 이를 承繼한다)

4. 公益事業의 범위

相續稅나 贈与稅가 非課稅로 되는 財產의 出捐에 있어서 宗教, 學術, 慈善, 기타의 公益事業은 다음 각号에 該當하지 아니한 公益事業과 教育에 관한 教育機關을 運營하는 것이라야 한다.

① 出捐者나 그 親族 또는 出捐者와 特別한 関係가 있는 者가 理事로 되어있는 法人이 運營하는 公益事業

② 出捐者나 그 親族 또는 出捐者와 特別한 関係가 있는 者가 理事의 選任 기타 事業運營에 관한 重要事項을 決定할 権限이 있는 公益事業

③ 그 事業의 目的이 社會的地位, 職業, 勤務地, 出生地등에 의하여 一部에게만 恵澤이 提供되는 公益事業

④ 出捐財產을 그 取得日로 부터 1年을 넘도록 当該出捐 目的에 使用하자 아니하는 公益事業

⑤ 事業을 終了한 때의 残余財產을 國庫에 归屬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公益事業

위에서 말하는 特殊한 関係가 있는 者와 함은 다음과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① 出捐者的 配偶者(事實婚關係에 있는者 包含)의 親族

② 出捐者の 使用人

③ 出捐者の 親族의 配偶者와 그의 4寸 以內의 親族

이와같이 相續稅나 贈与稅에서 非課稅가 되는 財產의 出捐을 出捐者나 그 親族 및 特殊關係 있는 者가 構成員으로 된 公益事業에 한 때에는 非課稅로 아니 하겠다고 72. 1. 1부터 施行되는 세法令에 規定한 理由는 似而非公益事業의 出現과 脱稅를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5. 家族控除

無制限納稅義務 곧 國내에 住所를 둔 者는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된 경우에는 課稅値額에서 相續開始當時의 被相續人の 配偶者와 被相續人の 同 家族 및 相續人中 未成年者, 60歲 以下의 年老者 또는 不具疾病者가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控除한다.

① 配偶者 150万원

② 未成年者 20万원과 20歲에 達할때 까지의 年數墓上인 墓地, 族譜와 祭具에 5万원을 끊한 金額의 合計額

③ 年老者 40万원

④ 不具殘疾者 40万원

위 第④에 該當하는 事項이 ①②③과 重複되는 경우에는 이를 合算한 金額을 控除한다. 不具殘疾者라 함은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痘어리, 봉사, 키며거리 기타 중대한 負傷을 입었거나 不治의 疾患에 걸려 恒常 着護를 必要로 하는 者를 말한다.

그리고 家族控除에 있어서는 同 家族에 限하는 바 同 家族이라 함은 被相續인이 事實上 扶養하고 있던 直系尊卑屬을 말한다.

또한 留意할 것은 이와같은 家族控除은 반드시 相續開始日로 부터 3個月以内에 相續稅에 관한 申告前에 家族控除申請者를 添付한 경우에 限하여 控除한다는 点이다. 다시말해서 3個月内에 相續財產明細 와 相續稅에 관한 申告 그리고 家族控除申請者를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法上 控除를 받을 수 있는데 控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있는 事例에 따르면 中產層의 경우 各種控除를 한다면 課稅額이 全無한대로 所定期日内에 申告를 아니하여 控除의 恵澤을 못받고 오히려 課稅가 된 일이 있다. 말하자면 檄자는 権利는 保護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相續稅나 贈与稅에 대한 解說은 次号에 까지 걸쳐지게 되겠음으로 이번回는 여기서 끝맺고 다음回에서 남아지 部分과 그리고 課稅値額의 算定 및 稅額 算出에 따른 實例를 좀 具體적으로 들어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까 한다. (계속)